

●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-1276호

「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0월 13일

국토교통부장관

**「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공고(안) 행정예고**

1. 개정이유

환매목적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 시 기준금액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업무상 혼선을 방지하고 감정평가업무 수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 될 수 있도록 함

2. 주요내용

가. 환매감정평가 수수료 산정 기준금액(안 제4조제2항제7호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일  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제출하여  
주시기 바라며,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www.molit.go.kr>정보  
마당>법령정보>행정예고란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
- 전자우편 : iamyb86@korea.kr
- 팩스 : (044) 201 - 5536